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82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김승수 · 안철수 · 김은혜
서천호 · 우재준 · 강대식
엄태영 · 정동만 · 김정재
김대식 · 김성원 · 이상휘
구자근 · 정점식 · 강명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거나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임. 특히, 일부 미반환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第10項”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본문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 ⑦ 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제60조의2제8항 전단 중 “제49조제10항”을 “제49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제49조제12항”을 “제49조제1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비용 등의 미반환자의 후보자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의 접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⑥ (생략) <u><신설></u></p> <p>⑦ ~ ⑩ (생략)</p> <p>⑪ 누구든지 選舉期間중 管轄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報받은 前科記錄을 閱覽할 수 있다.</p> <p>⑫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u>제10항</u>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舉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⑬ ~ ⑮ (생략)</p> <p>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錄</p>	<p>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u></p> <p>⑧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p> <p>⑫ ----- -----<u>제11항</u> ----- -----.</p> <p>⑬ ----- ----- -----<u>제11항</u>----- ----- ----- -----.</p> <p>⑬ ~ ⑮ (현행과 같음)</p> <p>제52조(등록무효) ① -----</p>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1. (생략)

② ~ ④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⑦ (생략)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

⑨ (생략)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제49조제11항-----

⑨ (현행과 같음)

⑩ -----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 ⑫ (생략)

----- . -----

-----제49

조제13항-----

----- .

⑪ · ⑫ (현행과 같음)